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26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실용 신안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3857	이철규의원	2024.9.1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11.2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2204272	이철규의원	2024.9.25	거쳐 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4.11.26.) 상정, 축조심 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 11. 2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11. 28.)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안을 보호·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 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6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여 또는"을 "대여 · 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대여 또는"을 "대여 · 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 또는 제49조"를 "제48조, 제49조 또는 제4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	3
을 생산·사용·양도· <u>대여</u>	대여
<u>또는</u>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u>• 수출 또는</u>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 <u>대여 또는</u> 수입하	<u>대여·수출 또는</u>
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	
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u><신 설></u>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저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5조제1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 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신 설>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조(양벌규정)
제48조, 제49
조 또는 제49조의3
1 . 0 (정체코 가 이
1. · 2. (현행과 같음) 2. 계40조이2이 겨우: 1어의 이
3. 제4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
<u>하의 벌금</u>